

의안번호	제 175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정윤숙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7년 11월 20일

#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윤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11. 20.

발 의 자 : 정윤숙·박종갑·이대원·  
이영복·이규완·권광택·  
민경환(7인)

## 1. 제안이유

2007. 4. 26.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되어 「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의 명칭을 「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으로 변경(안 제1조)

나. 협의회의 기능을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(안 제2조).

다. 협의회의 구성위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(안 제3조)

라.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(안 제9조)

바.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관련법령 : 붙임

##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중 “「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”을 “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
2.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
3. 도 고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
4. 도내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
5.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
6. 그 밖에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노사정위원회</u>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과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사협력증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(이하“<u>협의회</u>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능) <u>협의회</u>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li>3. <u>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	<p>제2조(기능) <u>협의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
<p>제3조(구성) ①<u>협의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</u></li> </ol>	<p>제3조(구성) ①<u>협의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도지사가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</u>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2.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</p> <p>3. 도를 대표하는 자</p> <p>4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</p> <p>5.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.</p> <p>제4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제7조 ~ 제11조 (생략)</p>	<p>2.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</p> <p>3. 도 고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</p> <p>4. 도내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</p> <p>5.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</p> <p>6. 그 밖에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.</p> <p>제4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 ~ 제11조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

제19조(지역노사정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

제16조(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)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,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3. 공익을 대표하는 자
4.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
5. 당해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2.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

④지역노사정협의회, 분과협의회,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